제조업 파견(아웃소싱)은 명백한 불법.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지금 당장 직접고용 의무 지시하라!

강원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의심 업체 고발 기자회견

□ 일시 및 장소 : 2025년 7월 14일(월) 11시 / 고용노동부 강원지청

□ 주최: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, 전국금속노동조합

<기자회견 순서>

○ 사회 :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김하종 미조직비정규부장

○ 발언

- 실태조사 결과 발표 : 전국금속노동조합 이대우 전략조직국장

- 규탄 발언 :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 김남순 본부장

- 촉구 발언 : 전국금속노동조합 허원 부위원장

○ 고발장 접수

○ 김상용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장 면담





강원지역 산업단지 불법파견 실태조사 결과

1. 개요

- 기간: 2025년 5월 12일(월) ~ 23일(금), 2주간

- 대상 : 강원도 원주시, 춘천시, 횡성군(제조업 사업장 다수 지역)

- 방법 : 알바몬 지역별 알바 정보 → 지역(강원) > 시·구·군(원주시/춘천시/횡성군) > 업직종(생산·건 설·노무 전체) 검색



2. 정보 확인 방법

1) 사용사업체

- 알바몬 검색 결과 중 기재된 사용사업체의 이름과 주소, 표시된 지도를 근거로
-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(https://sminfo.mss.go.kr/cm/sv/CSV001R0.do)을 이용하여
- 사용사업체 대표자. 주소를 확인하여 기재하였고
- 그 외 경우는 추정되는 사용사업체 또는 미상으로 기재함



기업명	(주)푸	대표자명	유	
기업형태	법인또는기타사업자	설립일	2014-02-17	
주소	강원원주시문막읍반계리			
주소(도로명)	강원 원주시 문막읍 반산2회			
홈페이지		주생산품	간편식품등	
표준산업	도시락류제조업	정보수정일자	2025-03-26	

2) 파견사업체

- 알바몬 검색 결과 하단의 '기업 정보'에 기재된 파견사업체의 이름, 주소를 기재하였고
-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현황(2024.6.30. 기준)과 비교하여 없는 경우 무허가 파견으로 기 재함(2024.6.30. 이후 신규로 등록한 파견사업체는 확인 불가)



- 3) 업직종(업무), 고용형태, 근무기간, 법 위반
- 알바몬 검색 결과를 그대로 표기함

3. 조사 결과(중복 포함)

		불법파견				기타 법 위반		
계	대상	기간	무허가	0 00/ 고페	주 52시간	남녀	수습 기간	차별
	위반	위반	파견	3.3% 공제	초과	차등 임금	감액·불명확	시정
29	29	24	20	4	8	1	2	2

- 대상 위반 : 파견법 제5조(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)에 따라 제조업 직접생산공정업무는 불법파견이고, 조사 대상을 '생산·건설·노무 전체'로 한 검색 결과이므로 100% 해당함
- 기간 위반: 파견법 제6조(파견 기간)에 따라 △ 출산·출산·부상 등의 경우는 필요한 기간, △ 일시 적·간헐적으로 인력이 필요한 경우는 3개월 이내(3개월 연장 가능)임. 그러나 통상 제조업 파견은 두 사례에 해당하지도 않고, 설령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해 연장하는 사례는 없음. 따라서 근무 기간을 '3개월 이상'으로 기재한 경우 기간 위반으로 분류함
- 무허가 파견: 고용노동부 근로자파견 사업 허가 업체 현황(2024.6.30. 기준)과 비교하여 없는 경우 무허

가 파견으로 분류함

- 기타 법 위반: 3.3% 공제, 주 52시간 초과, 남녀 차등 임금, 수습 기간 감액 임금 지급·기간 불명확, 차별시정 등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고, 실제 사업장 특별근로감독 과정에서 추가적인 불법 요소에 관해 확인이 필요함
 - 일급은 근무하신 다음날 3.3% 공제후 입금
 - 근무시간 8:30 20:30 / 20:30 8:30 2조2교대
 - (월-금 기본근무 + 토요일 특근 + 잔업 2.5시간 포함)
 - * 아르바이트 금액

주간) 남120,000원 여, 113,000원

야간) 140,000원(남,여)

- · 수습 근무 후 정규직 전환
- 정규직 전환 후 상여금 발생 300% / 연차별 차등지급 / 연말 성과금 발생

4. 고용노동부 요구사항

- ▷ 파견법 위반 의심 사용·파견사업체업에 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결과 통보
- ▷ 파견법 위반으로 확인 시 벌칙 부과, 사용사업체 대상으로 직접고용 의무 지시, 파견사업체 대상으로 허가 취소·폐지 조치 시행
- ▷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 위반으로 확인 시 체불임금 지급 등 관련 조치 시행
- ▷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규정 제7조(위법부당행위 및 행정처분에 대한 통보)에 따른 조치 시행

고발장 주요 내용

1. 고발인

김남순 강원도 춘천시 효자로 116 033-261-5619

장창열 서울시 중구 정동길 5(정동 22-2) 경향신문사 별관 6층 02-2670-9555

2. 피고발인

강원지역 소재 사용사업주(명단 별지 기재) 피고발인1과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(명단 별지 기재)

3. 고발 취지

- 피고발인 1~2에 대하여 '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(이하 파견법)', '근로기준법', '남녀고용평등과 일
- •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남녀고용평등법)' 등을 포함한 각종 위반 혐의에 대한 철저히 수사
- 법 위반으로 드러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, 직접고용 의무 지시 등 후속 조치 시행

4. 고발 이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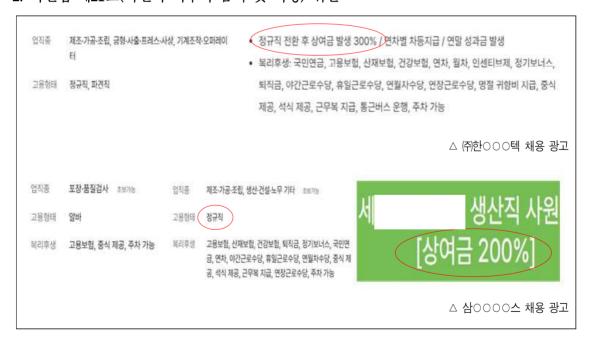
- 피고발인 1~2의 파견법 제5조(근로자파견 대상 업무 등), 제6조(파견기간), 제7조(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), 제21조(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 등) 위반 사실
- 피고발인 2의 근로기준법 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 위반 사실
- 피고발인 2의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사실
- 피고발인 2의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수습 기간 감액 임금 지급, 소득세 명목 3.3%를 공제 후 지급 등법 위반행위

불법적인 구인 광고 예시

1. 파견법 제5조(근로자파견 대상 업무), 제6조(파견기간) 위반



2. 파견법 제21조(차별적 처우의 금지 및 시정) 위반



3. 근로기준법 제53조(연장 근로의 제한)



- 일 10.34시간 × 주 6일 = 60.04시간

4.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위반

●담당업무 -전처리부: 재료준비 및 식품조리 조리, 아채, 파트 담당 - 취반부: 밥 생산 - 성형장: 토핑, 포장 라인작업 (검수,臺하) 파트: 도시락, 삼각, 유부초밥 등 주간조 (7:00 ~ 16:00) ■근무안내 원~일 (주 7일 스케줄 근무)	
7:00 ~ 16:00 / 휴게시간 90분 ■일급안내 기본 8시간 근무 일급 남자 112,000원 여자 105,000원	